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12월 28일
- 회부일자 : 2000년 12월 29일

3. 제안이유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는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생산·연구·주거단지와 자연이 조화된 첨단기술전원도시로서
- 첨단기술전원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미호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민간사업자 등이 위탁·운영관리할수 있는 근거,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위탁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입주업체의 오·폐수의 유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입주업체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검토의견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오창산업단지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근 하천인 미호천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처리시설의 운영비용이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공단 등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도비로 일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조속한 분양과 입주를 완료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것으로 사료됨